

「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제한을 조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연임 제한 변경(안 제22조제7항)
 - (당초) 한차례만 연임 가능 → (변경) 두차례 연임 가능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제한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현재 구미시는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, 주민자치기능 강화,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.
- 다만, 위원장의 임기 제한을 조정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적 정착의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으며,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동참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주민자치위원회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집행기관과 주민자치위원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